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입주자모집공고

%약 Home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2.20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u>종합저축으로 전환</u>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홈페이지	대표번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분양일정, 청약안내 등
https://www.prugio.com/hb/2024/tangjeong_c1/	1551-1416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모	집공고일 현재 아산시 거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국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힌	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성	상한제	택지유형		
10년		1년	없음	적용	3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2.20.(금)	2024.12.30.(월) ~ 2024.12.31.(화)	2025.01.02.(목)	2025.01.03.(금)	2025.01.09.(목)	2025.01.11.(토) ~ 2025.01.15.(수)	2025.01.20.(월) ~ 2025.01.22.(수)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견본주택」내 분양 상담전화(☎1551-1416)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2.20.(금)**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4.12.18.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쳐다건	이전기관			일반공급				
신청자격 	(산업단지)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불필요	6개월 이상, 지	역별·면적별 예치금 충	등족	1순위(6개월 이상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 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단,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8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일반공 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이전기관 종사자 제외)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이전기관(산업단지)종사자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3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 제3항 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라,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E 배고그	이전기관(종사자)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	그 외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구핵영월 구석위 구점으도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단,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8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특별공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물량 중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4/tangjeong_c1)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을 초고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괴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0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O	Χ							

※ 단, 이전기관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해당 주택건설지역(아산시)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4.12.1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2.20.(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전국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아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이전기관(산업단지),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12.30.(월)~2024.12.31.(화)	2025.01.02.(목)	2025.01.03.(금)	2025.01.09.(목)	2025.01.11.(토)~2025.01.15.(수)	2025.01.20.(월)~2025.01.22.(수)
1 2 2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	방읍 연화로 90)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10년 이상 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 공동주택과 - 51740호(2024.12.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C1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29층 16개동 총 1,416세대

[특별공급 807세대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137세대, 기관추천 66세대, 다자녀가구 137세대, 신혼부부 208세대, 생애최초 221세대, 노부모부양 3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틱	박공급면적(m²)	기타						특별	공급 세대	대수				최하층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이전기관 (산업단지) 종사자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01	059.9913A	59A	59.9913	23.2075	83.1988	37.4202	120.619	33.3334	198	19	10	19	35	5	37	125	73	14
	02	059.9949B	59B	59.9949	23.5799	83.5748	37.4224	120.9972	33.3354	58	5	5	5	10	1	11	37	21	4
	03	084.9742A	84A	84.9742	24.4471	109.4213	53.0035	162.4248	47.2148	559	55	31	55	100	16	106	363	196	23
2024000221	04	084.9884B	84B	84.9884	25.7704	110.7588	53.0124	163.7712	47.2227	297	29	15	29	53	8	56	190	107	12
2024000221	05	084.9932C	84C	84.9932	25.5973	110.5905	53.0154	163.6059	47.2254	59	5	5	5	10	1	11	37	22	3
	06	109.9608	109	109.9608	26.1325	136.0933	68.5892	204.6825	61.0983	240	24	-	24	-	7	-	55	185	10
	07	136.6657	136	136.6657	38.0772	174.7429	85.2466	259.9895	75.9366	5	-	-	-	-	-	-	-	5	-
					합 :	계				1,416	137	66	137	208	38	221	807	609	66

(다위·m² 세대

-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분양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의 변경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해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 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오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9913A	059.9913A 059.9949B		084.9884B	084.9932C	109.9608	136.6657	
약식표기	59A	59B	84A	84B	84C	109	136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표 (단위:m², 원)

약식	동별	+	공급		공급금	급액		계약금	t (10%)			중도금	t (60%)			잔금 (30%)
표기	라인별	충구분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기가치세	계	계약시	계약후 1개월이내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입주 지정기간
										(*25.06.20.)	(*25.12.20.)	(*26.06.20.)	('26.12.20.)	('27.05.20.)	(*27.10.20.)	
		1층 	3	87,090,000	168,910,000	-	256,000,000	10,000,000	15,6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76,800,000
	204동(1,2,4호)	2층	13	93,900,000	182,100,000	-	276,000,000	10,000,000	1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27,600,000	82,800,000
59A	205동(1,2,3,5호) 212동(1,2,3,5호)	3~4층	28	99,000,000	192,000,000	-	291,000,000	10,000,000	1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29,100,000	87,300,000
	213동(1,2,4호)	5~9층	70	102,400,000	198,600,000	-	301,000,000	10,000,000	20,100,000	30,100,000	30,100,000	30,100,000	30,100,000	30,100,000	30,100,000	90,300,000
		10~15층	84	104,100,000	201,900,000	-	306,000,000	10,000,000	2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30,600,000	91,800,000
		1층	2	80,290,000	155,710,000	-	236,000,000	10,000,000	1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70,800,000
	204동(3호) 205동(4호) 212동(4호) 213동(3호)	2층	4	87,090,000	168,910,000	-	256,000,000	10,000,000	15,6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25,600,000	76,800,000
59B		3~4층	8	92,190,000	178,810,000	-	271,000,000	10,000,000	1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81,300,000
		5~9층	20	95,600,000	185,400,000	-	281,000,000	10,000,000	1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28,100,000	84,300,000
		10~15층	24	97,300,000	188,700,000	-	286,000,000	10,000,000	1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85,800,000
	201동(1호)	1층	3	132,340,000	256,660,000	-	389,000,000	10,000,000	2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116,700,000
	202동(1호) 203동(1호) 206동(1호)	2층	21	141,860,000	275,140,000	-	417,000,000	10,000,000	3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125,100,000
84A	207동(1,3,4호) 208동(1호) 209동(1,3,4호)	3~4층	46	149,010,000	288,990,000	-	438,000,000	10,000,000	3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31,400,000
	210동(1,3,4호) 211동(1,3,4호) 214동(1,2호)	5~9층	115	153,770,000	298,230,000	-	452,000,000	10,000,000	3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35,600,000
	215동(1,2호) 216동(1,2호)	10층 이상	374	156,150,000	302,850,000	-	459,000,000	10,000,000	3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137,700,000
	201동(2호) 202동(2호) 203동(2호)	1층	4	128,940,000	250,060,000	-	379,000,000	10,000,000	2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37,900,000	113,700,000
84B	206동(2호) 207동(2호) 208동(2호)	2층	12	138,460,000	268,540,000	-	407,000,000	10,000,000	3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122,100,000
	209동(2호) 210동(2호) 211동(2호)	3~4층	24	145,610,000	282,390,000	-	428,000,000	10,000,000	3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128,400,000

약식	동별		곣급		공급금	异액		계약금	† (10 %)			중도금	f (60 %)			잔금 (30%)
료기	라인별	충구분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차세	계	계약시	계약후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입주
					[140]	T 1 1 1 1 1 1	71	게국시	1개월이내	(*25.06.20.)	(*25.12.20.)	(*26.06.20.)	(*26.12.20.)	(*27.05.20.)	(*27.10.20.)	지정기간
		5~9층	60	150,370,000	291,630,000	-	442,000,000	10,000,000	3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132,600,000
	214동(3호) 215동(3호) 216동(3호)	10층 이상	197	152,750,000	296,250,000	-	449,000,000	10,000,000	3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44,900,000	134,700,000
		2층	3	135,060,000	261,940,000	-	397,000,000	10,000,000	2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119,100,000
84C	214동(4호) 215동(4호) 216동(4호)	3~4층	6	142,200,000	275,800,000	-	418,000,000	10,000,000	3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125,400,000
84C		5~9층	15	146,970,000	285,030,000	-	432,000,000	10,000,000	3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129,600,000
		10층 이상	35	149,350,000	289,650,000	-	439,000,000	10,000,000	3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1층	4	158,914,000	308,260,000	30,826,000	498,000,000	10,000,000	3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149,400,000
	201동(3,4호)	2층	10	170,395,000	330,550,000	33,055,000	534,000,000	10,000,000	4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60,200,000
109	202동(3,4호) 203동(3,4호) 206동(3,4호)	3~4층	20	179,014,000	347,260,000	34,726,000	561,000,000	10,000,000	4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168,300,000
	208동(3,4호)	5~9층	50	184,760,000	358,400,000	35,840,000	579,000,000	10,000,000	4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73,700,000
		10층 이상	156	187,633,000	363,970,000	36,397,000	588,000,000	10,000,000	4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58,800,000	176,400,000
136	201동(3호) 202동(3호) 203동(3호) 206동(3호) 208동(3호)	24층 27층 25층 25층 25층	5	288,780,000	560,200,000	56,020,000	905,000,000	10,000,000	80,500,000	90,500,000	90,500,000	90,500,000	90,500,000	90,500,000	90,500,000	271,500,000

-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의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제1항에 의거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아산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3.3058]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기 선택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 공급금액 미포함 기준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시점이라 하고 중도금은 기준시점을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지 않음)
- 잔금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해야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대출을 원할 경우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협약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지적 정리사업, 확정측량 및 사업시행 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감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입주예정월이 단축될 경우 공급대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축되는 입주예정월에 따라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상 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충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하층 및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조경시설물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공급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9A	59B	84A	84B	84C	109	136	합 계		
이전기관(산업단지	19	5	55	29	5	24	-	137		
	철거민	(제36조 제1호)	-	-	1	-	-	-	-	1
	=	국가유공자	2	1	6	3	1	-	-	13
	장기-	복무 제대군인	2	1	6	3	1	-	-	13
기계차차 트변고그	10년 이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6	3	1	-	-	13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소기업 근로자		2	1	6	3	1	-	-	13
	장애인	충청남도	1	-	4	1	1	-	-	7
		대전광역시	1	-	1	1	-	-	-	3
		세종특별자치시	-	1	1	1	-	-	-	3
다자녀가-	구 특별공급		19	5	55	29	5	24	-	137
신혼부부 특별공급			35	10	100	53	10	-	-	20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1	16	8	1	7	-	38	
생애최초 특별공급			37	11	106	56	11	-	-	221
합	계		125	37	363	190	37	55	-	80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특별공급

4

구분			내용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9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년수 제한 예외) 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네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	이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0 ·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공급기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 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 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청약한 경우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무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청약부금 : 85m'이하 주택형-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85m² 이하 주택형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통장 자격요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아산시 또는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대전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

공급 세대의 10%범위 : 137세대

ı	구분	내용
	관련근거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의거 공급합니다.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기관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4조제1항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합니다. ① [입주(예정)기업]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하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 ② [연구소]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하여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③ [의료기관]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종사자 ④ [교육기관] 해당 산업단지에 설치(예정)하여 「유아교육법」제1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해당 산업단지가 속한 아산시(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공급 대상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특별공급 대상 아산디스플레이시티1일반산업단지[구:탕정컴플렉스],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아산현대모터스밸리[구:인주2공구], 아산디스플레이시티2일반산업단지[구:탕정2], 아산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유용일반산업단지, 아산제2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구:음봉디지털],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탕정일반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 역치일반산업단지, **(해당 산업단지)** │ 인주일반산업단지(3공구), 음봉일반산업단지, 둔포농공단지, 득산농공단지, 배미농공단지, 신인농공단지, 신창농공단지, 영인농공단지, 탕정농공단지, 둔포제2농공단지, 도고농공단지 │※ 아산시(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산업단지(아산디스플레이시티1일반산업단지(구:탕정컴플렉스),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아산현대모터스밸리(구:인주2공구), 아산디스플레 시티2일반산업단지[구:탕정2]. 아산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운용일반산업단지, 아산제2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구:음봉디지털],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탕정일반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 염치일반산업단지, 인주일반산업단지(3공구), 음봉일반산업단지, 둔포농공단지, 득산농공단지, 배미농공단지, 신인농공단지, 신창농공단지, 영인농공단지, 탕정농공단지, 탕정농공단지, 둔포제2농공단지, 도고농공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주택소유 판단은「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2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판단합니다. 유의사항 -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의 동·호 배정은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 불법전매로 계약이 취소된 자 동·호는 2019.08.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재공급하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가 2021.05.24. 개정되어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세대원 포함)도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이 불가합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4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사업주체가 산업단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 다만,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입주기업의 경우에도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이 주택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기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다만, 연구원 보유의 최소 기준은 시 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립·공립 연구기관 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 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 대상자 3.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기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 4. 해당 산업단지에 설치하는(기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세부사항 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시근로자의 범위 - 제4조의2(상시근로자의 범위)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범위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의 범위

-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 2. "유치워"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4. "방과후 과정"이란「유아교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연구기관의 범위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기관명<개정 2021.08.17.>
- 1. 한국개발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통일연구원, 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 산업연구원,
- _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 한국법제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19. 한국환경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국토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 건축공간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기관명<2020.05.19.>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나.「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 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 기관을 말한다.
-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 ①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 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②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 ③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 ④ 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 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⑤ 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연구산업진흥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 서 연구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립·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사.「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
	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 의료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1인 창조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연구산업진흥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
	서 연구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 조태의 트법과 그용 사회되었는 것은 「사업다지 의주기업 조기지 등에 관한 조태트법과 그 유연기조, 법지 제4호 나시에 띄기 조태트법과 그 대사기관이 작이 반급한 회의식이 법지 제2호
	- 주택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와 별지 제2호
청약 신청방법	서식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위 내용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및 유의사항	ㅆ합니다. - 산업단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 보답면서 위단기단 조심의 오구 다구구한편 경기미에면을 중한 전되고 되고 기술합니다.

4-2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5% 범위 : 6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구 분	관련 법규	해당 기관					
	철거민 [청약통장 불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철거민	산업단지 조성 사업주체					
추천기관	국가유공자 [청약통장 불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000175/10 70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인터넷 청약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관련 법규	해당 기관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청약통장 불필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8,100 554]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여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 철거민 대상자는 산단조성 사업적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 	·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다	H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4-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37세대

구문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 ■ ①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 해당지역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지 ■ ②배점 ##점기준								
	배점항목	총배점	기준	점수	키프				
당첨자	계	100							
선정방법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3명 이상	15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배점항목	ᅔᄈᅒ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 백급8국	동매점	기준	점수	비포
			1명	5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 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 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 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 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 - (충청남도)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5	(000)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	니 이나 가족과?	#증명서로 화인(이호·재호이 경	 우 자녀기	현, 영역시작에서 영합시작으로 한편한 영우 한편에 등대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				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비고	■ 자녀기준 - (③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이혼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비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③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 (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등로표도보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4-4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20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당첨자 선정방법

비고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아산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 (아산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전국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 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 17 -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2.20.(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ul O	소득금액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004,510원~	8,248,468원~	8,775,072원~	9,563,283원~	10,351,494원~	11,139,705원~	
신생아일반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8,405,412원~	9,898,161원~	10,530,086원~	11,475,939원~	12,421,793원~	13,367,646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3억3,100만원		- 건축물가액은	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T =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토지	단, 아래 경. * 「농지법」 / 등재된 경. * 「초지법」 / 소재지와 . * 공부상 도로 * 종중소유 5	우는 제외 데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을 우 데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선 동일한 주소인 경우 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E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히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38세대

4-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 해당지역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전국 거주자 ■ ②가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당첨자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 H 아기즈 A	35	1명	10	5명	30
	②부양가족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기비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2 + 3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6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 221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FUAFTL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대상자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 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r CL 7II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 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 (아산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전국 거주자

■ 자녀기준

비고

당첨자 선정방법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2.20.(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25十七	미뀰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추첨공급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2.11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O(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구력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등재된 경약 * 「초지법」제 소재지와 원 * 공부상 도로 * 종중소유 토 경우로서 1	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 우 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 동일한 주소인 경우 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히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5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디	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치ㅊ 이즈되다지고그의 취계 시쳐되어 처야!			
1순위 ①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②청약부금: 85㎡ 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기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	·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라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당액 이상인 분	계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①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②청약부금: 85㎡ 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기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복	①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연 ②청약부금: 85㎡ 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②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①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청약부금: 85㎡ 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면적별 0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아산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전국 거주자

■ ②가점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60m² 이하	59A / 59B	40%	60%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84A / 84B / 84C	40%	60%	
	85m² 초과	109 / 136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절	성산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①무주택기간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35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년 미만 20 년 미만 22 년 미만 24 년 미만 26 년 미만 28 년 미만 30 당 32 25 30 당 35 년 미만 10 년 미만 11 년 미만 12 년 미만 12 년 미만 13 년 미만 15 년 미만 15 년 미만 15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입주자저축		본인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17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가입기간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шІОТІ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배우자	메우사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은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 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구 분	내 용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입주자저축의 종	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ያ약 시 유의사항 !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넘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기관(산업단지)종사자 특별공급 신청 방법(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선택 → APT특별공급 선택 → 청약신청 선택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선택) → 이전기관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신청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 → 서약서 동의 → 청약신청자 작성

 → 청약내용 확인 → 신청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추가서류	제출 생략)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또는 영주증을 말함)
, , , ,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l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힘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민영주택)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공고단지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청약연습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1.9.(목) ~ 2025.1.18.(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청약홈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발표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서비스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5.1.9.(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자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 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구 분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비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2025년 1월 11일(토) ~ 2025년 1월 15일(수), 5일간 10:00 ~ 17:00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견본주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90)	방문 예약제(예정)

- 서류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시 일정 안내 드립니다.
- 당첨자의 서류접수 일정 간 접수과밀이 예상되어, 예비입주자의 서류접수 일정은 분리되어 있으므로 상기 해당 일정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에 의거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계약체결 이전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당해 거주기간,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 사유로 자격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접수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 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 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및 계약하지 않을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4/tangjeong c1)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신청자격 확인서류

구분	<u>서류</u> 필수	류유형 추가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0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외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해당자)	인감증명서 또는			
	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0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0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청약 및 기관추천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0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아산시)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0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해외근무자	0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단신부임)		0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 및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이전기관	0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특별공급대상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대상 기관장 날인) ※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4/tangjeong_c1/)에서 서식 다운로드	
(산업단지) 종사자	0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특별공급	0		서약서		• 견본주택 비치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청약자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중이고게즈며 나사네\	청약자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0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출산 이행 각서	배우자	• 임신의 경우	
		0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서루	류유형			
구분		추가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0		혼인관계증명서	청약자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및 혼인여부 확인, "상세" 발급
				+101-1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만19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0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전원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시중되다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생아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신혼부부 ᄩ병고그		_	0.11751.1.5.1.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특별공급		Ο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출산 이행각서	배우자	• 임신의 경우
		0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UEU . OHH	청약자 및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Ο	부동산 소유현황	세대원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0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노부모부양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특별공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7/11/21/7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여부 확인
	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u>● 납구시 포납증포를 한세 본인 역구 확인</u>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101-1 01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분리세대 포함)
				만19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0		소득 증빙서류	세대원 전원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생애최초		0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특별공급			ιου -πυσ	세대원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신생아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해당자)			
		0	출산 이행각서		• 임신의 경우
		0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0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추가서류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니다거		0			• 건축물등기부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0	헤다 주태에 대하 스며지크	쉐다즈태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0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0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0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책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주민센터 ①,②주민센터 ③서울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농지대장 ②축산업 허가증 ③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주민센터 ②지자체 축산과 ③토지이음(www.eum.go.kr)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근 로 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②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세무서
자 영 업 자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② 세무서
24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제무재표 ③ 재직증명서 ④ 사업자 등록증명 ⑤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① ~ 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⑤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원본, 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① 세무서,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원본)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또는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이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기 내용 참조
2	2023.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소득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구분	확인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B3-411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 20-802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상기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청약자 본인의 통산 5년의 납부 실적을 의미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신청자격 확인서류

구분	<u>제출</u> 필수	추가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해당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0		世亡。		
공통서류	Ο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제출	들유형 			
구분	필수	추가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해당자)	이기즈머니 rr L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0		인감도장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0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인터넷청약 및 기관추천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0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아산시)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해외		0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0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불가
근무자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단신		0		및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부임)				세대원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	•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추가서류		0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배우자가 서류제출 전 기당첨되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가점제, 예비 입주자)		0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주민등록표초본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0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0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0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추가서류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0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0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0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0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m²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m²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판단 사례
- 청약접수 결과 경쟁 발생 시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
- 청약접수 결과 미달 발생 시 : 정당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시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
- ※ 청약경쟁시 발생 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분	공급세대	접수	당첨자	정당계약	잔여	세대	잔여세대 추가계약	분양권 현황(주택소유 판단)	
ᅮᇎ		<u></u>	공감사	(분양권 ①)	미분양	미계약	(분양권 ②)		
A 사업장	100	200(경쟁)	100	100	Х	Х	X	• 분양권① 주택 소유	
B 사업장	100	200(경쟁)	100	80	Χ	20	20	• 전체 분양권 주택 소유 (미분양 아님)	
C 사업장	100	50(미달)	50	30	50	20	70 (50+20)	• 분양권① : 주택소유, 분양권②: 전체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 포기후 분양권② 계약 시 주택 소유)	
D 사업장	100	50(미달)	50	50	50	Х	50	• 분양권① : 주택 소유 / 분양권② : 주택 미소유	

- [※ 잔여세대 추가계약(분양권②) : 사전 예약접수, 사후 추가접수, 사업주체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에 따른 계약자는 모두 분양권(주택 소유)으로 간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공급주택)]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8

구 분	일 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01.20.(월)~ 2025.01.22.(수)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90)

- ※ 당첨자는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당첨 효력이 상실됨)
-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항목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1차 계약금	우리은행	1005-004-654870	㈜대우건설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 상기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잔금은 [우리은행, 1005-004-654870, 예금주 : ㈜대우건설]으로 집금됩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흥길동'으로 기재)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관리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0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0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 접수 장소에 비치		
본인 계약 시	0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본인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별도 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2만원,		
		0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홈페이지 서식 게시 / 접수 장소에 비치 (※ 6억 초과주택에 한함)		
		0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은 대리불가)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0		위임장	(청약신청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0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재외 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계약 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름)

대상증서	1.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계약서) 2.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 도급 증서(계약서 1통마다 납부)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 증서에 대한 인지세 별도 납부								
납부기한	2023.01.01. 시행된「인지세법」저	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	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서	│ 납부					
납부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			배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	서 등)에 첨부				
1.4-4.70#	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금액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인지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 기준(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 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한 '도급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며 계약체결 시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 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연대보증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최초 계약체결 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당첨된 경우는 제외)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시 유의사항

-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 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2020.02.21.부터 개정·시행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한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는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납부일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총액은 계약자가 입주지정기간 말일(단 입주지정기간 이전 입주시는 실제입주일)까지 사업주체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시에는 계약서상의 연체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 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 불기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대규모 물류 마비, 파업, 문화재 발굴 또는 사업주체 귀착 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공공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세대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 사업지는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하여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준공일자와 아파트 준공일자가 다를 수 있어 아파트 준공과 토지등기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호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주방가구 및 신발장 설치 위치와 크기는 사업승인도면에 준함)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문	목재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발코니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바닥난방+시멘트모르타르(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시트 및 벽패널류 등), (가변형벽체, 발코니, 실외기실, 신발장, 재료분리대(욕실포함)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월패드, 전자식스위치류, 스위치/콘센트류 (시공가능한 위치만 설치)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우물천장,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장도장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소방감지기
욕실	천장, 타일(바닥,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 수전 등), 샤워부스, 욕실액세서리 일체,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렌치 포함), 욕실환풍기	지정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스위치, 콘센트, 배기덕트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가스쿡탑, 싱크절수기	소방관련 시설, 배기덕트, 설비배관, 전기배관 및 배선
조명기구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 일체	배관, 배선 등

[※] 평형 및 타입별 품목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원)

약식표기	59A	59B	84A	84B	84C	109	136	
마이너스	26 210 000	26 420 000	22.012.000	24161.000	22.007.000	42 522 000	F2.764.000	
옵션금액	26,319,000	26,438,000	33,813,000	34,161,000	33,807,000	42,522,000	53,764,000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 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 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기본형에서 마이너스 옵션을 반영하여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하신 후 사업주체와 무관하게 계약자의 개별적인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시공 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 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향후 계약자가 시공할 경우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를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 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10 입주관련 안내

■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주택법」제48조의2「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3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 부여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입주시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대규모 물류 마비, 파업 문화재 발굴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공공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공사

11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원, VAT 포함)

약식표기	59A	59B	84A	84B	84C	109	136
발코니 확장 금액	5,420,000	5,430,000	5,430,000	7,021,000	9,095,000	7,305,000	10,592,000

-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는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는 별도로서 VAT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선택 옵션사항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입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별 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주택형별 타입별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이후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월패드, 화재감지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등의 설치 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 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마감 연장, 욕실1 포켓도어(84A.B.C / 109 / 136), 전동 빨래건조대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품목 (모든 플러스옵션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1. 평면옵션 및 특화품목 등

- 평면선택 및 추가선택품목(마감 특화옵션, 수납 특화옵션, 주방 특화옵션, 빌트인 가전옵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시스템청정환기 등)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고객 간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 (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견본주택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일회사의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설치된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의 마감이 적용되며, 옵션의 형태 및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카달로그 등 안내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9A,B, 84A,C,D 84B 마감 기준 / 136 109 마감 기준)

1) 라이프업 스타일링 옵션 (유상)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선택형(유상)		금 액	비고
현관 중문	전 타 입	1안	미설치	2안	3연동 자동중문	2,350,000	

- 현관 중문은 자동형으로 현관에서 세대로 진입 시 자동으로 열리며, 세대에서 나갈 시에는 별도의 버튼으로 작동하며, 개별적인 속도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 본 공사 시 센서 및 버튼의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기본형(1안) 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VAT포함)

I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비고	
						59A	1,848,000		
					59B	1,848,000			
	T J		4 7141 015 91 5101/5001/500	2안		84A	2,500,000		
		1안	1. 거실 아트월 : 타일(600*600) 2. 벽 : 실크벽지		1. 거실 아트월 : 대형타일(600*1,200) 2안 2. 벽 : 흡착벽지 3. 바닥 : 전 실 광폭강마루(섬유판)	84B	2,500,000		
특화	H		3. 바닥 : 전 실 강마루(섬유판)			84C	2,500,000		
						109	3,167,000		
						136	3,947,000		

- 벽 마감재 옵션은 도배지가 시공되는 벽 부분에 해당되며, 천장은 제외됩니다.
- 본공사 시 강마루의 제조사, 규격, 사양 및 시공패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타입 및 평면옵션에 따라 시공부위가 상이합니다.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비고
						59A	1,520,000	
				2안	1. 특화 조명기구 : 거실 라인간접등 / 침실 엣지등(침실1,2,3) 2. 스마트스위치 고급형(거실,주방,침실1,2,3)	59B	1,740,000	
						84B	1,570,000	
				2안	1. 특화 조명기구 : 거실 라인간접등 / 침실 엣지등(침실1,2,3) 2. 스마트스위치 고급형 (거실,주방,침실1,2,3,알파룸)	84C	2,290,000	
	전			2안	1. 특화 조명기구 : 거실 라인간접등 / 침실 엣지등(침실1,2,3,알파룸) 2. 스마트스위치 고급형 (거실,주방,침실1,2.3,알파룸)		1,780,000	주방특화 미선택 시
조명 특화	타	1안	1. 기본 조명기구 2. 스마트스위치 일반형 -	201	1. 특화 조명기구 : 거실 라인간접등 / 침실 엣지등(침실1,2,3) 2. 스마트스위치 고급형 (거실,주방,침실1,2,3)	84A	1,570,000	주방특화 선택 시
	입			2안	1. 특화 조명기구 : 거실 라인간접등 / 침실 엣지등(침실1,2,3,4) 2. 스마트스위치 고급형 (거실,주방,침실1,2,3,4)		2,190,000	주방특화 미선택 시
				3'	3안	1. 특화 조명기구 : 거실 라인간접등 / 침실 엣지등(침실1,2,3) 2. 스마트스위치 고급형 (거실,주방,침실1,2,3)	109	1,980,000
				2안	1. 특화 조명기구 : 거실 라인간접등 / 침실 엣지등(침실1,2,3,4) 2. 스마트스위치 고급형 (거실,주방,침실1,2,3,4)		2,270,000	주방특화 미선택 시
				3안	1. 특화 조명기구 : 거실 라인간접등 / 침실 엣지등(침실1,2,3,4) 2. 스마트스위치 고급형 (거실,주방,침실1,2,3,4)	136	2,860,000	주방특화 선택 시

• 타입에 따라 등기구의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조명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거실, 침실등의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은 하부면을 비추는 조명부분만 제공됩니다.
- 조명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타입 및 평면옵션에 따라 조명기구 및 스마트스위치의 특화 범위가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에만 디밍과 색온도 제어가 가능한 풀터치 고급형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되며, 기본형(1안) 선택 시 조명ON/OFF 기능만 가능한 일반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 스마트스위치의 설치 위치에 따라 스마트스위치의 기능 및 형태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타입 주방 및 84C 타입 알파룸 스마트스위치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2) 라이프업 수납 옵션 (유상)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비고
		1 OL	1. 기본 신발장	201	1. 특화 신발장: 디자인선반(조명) + 신발살균기	59A	1,050,000	
		1안	1. 기근 신발성	2안	2. 가구판넬	59B	1,050,000	
						84A	1,950,000	
현관			1. 기본 신발장	2안	2안 1. 특화 신발장: 디자인선반(조명) + 신발살균기 2. 현관창고 폴딩도어(판넬연장) + 시스템선반	84C	1,950,000	
수납 특화	타 입	1안	2. 현관창고 기본도어(여닫이)			109	2,512,000	
						136	2,761,000	
		1안	1. 기본 신발장 2. 현관창고 기본도어(여닫이)	2안	1. 특화 신발장: 디자인선반(조명) + 신발살균기 2. 현관창고 폴딩도어(판넬연장) + 시스템선반 3. 복도팬트리	84B	2,415,000	

- 현관 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현관 창고도어 사이즈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현관창고 내부 시스템선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기본형(1안) 대비 신발장 내부 수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신발살균기 및 조명의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59A, 59B타입은 현관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신발장 두 통 가운데 한 통에만 디자인선반(조명)이 적용됩니다.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비고
						59A	4,381,000	
						59B	3,604,000	
	전 드레스룸 타 1 특화 입			201	1. 포켓도어	84A	3,908,000	
				2안	2. 디자인 시스템선반 (조명포함) 3. 천장형 제습기	84B	6,136,000	
		1안	미설치			84C	6,776,000	
특화						136	7,762,000	
				2안	 포켓도어 디자인 파우더장 디자인 시스템선반 (조명포함) 천장형 제습기 	109	9,717,000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별도의 파우더장, 드레스룸 도어 및 선반은 제공되지 않으며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천장형 제습기(코스텔, CDD-600B)가 포함되며, 개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시 작동 소음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포켓도어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조명기구 SPEC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유리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 수량 및 시공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에도 드레스룸의 난방은 침실1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 본 공사 시 디자인 시스템 선반의 제조사,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비고
침실3	FOA (D	101	DIA +I	201	침실3 붙박이장	59A	1,386,000	
붙박이장	59A/B	[]인	미설치	2안	(폴딩도어)	59B	1,386,000	

• 타입별로 붙박이장의 길이는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비고
						84A	3,212,000	
	84A/B/C,					84B	3,212,000	
침실2,3 붙박이장	109,	1안	미설치	2안	침실2,3 매립형 붙박이장 (폴딩도어)	84C	3,212,000	
E 1-10	136				(E 0 ± -1)	109	3,506,000	
						136	4,037,000	

• 침실2.3 불박이장 옵션형(2안) 선택 시, 침실2 및 침실3의 가로폭 사이즈가 줄어들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라이프업 키친 옵션 (유상)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비고
					 1.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59A	4,222,000	
					2. 외산 싱크수전	84A	4,138,000	
				2안	3. 주방 특화조명기구 : 커튼박스 간접등 + 주방 작업등 + 주방 슬림라인등 + 식탁레일등	84B	3,835,000	
주방 스타일링	59A/B, 84A/B/C,	1안	1. 벽: 타일(300*600) / 상판: MMA 2. 국산 싱크수전		4. 주방TV(13인치 AI음성인식)	109	4,863,000	
특화	109		3. 주방 기본조명기구	2안	1.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2. 외산 싱크수전 3. 주방 특화조명기구 : 커튼박스 간접등 + 주방	59B	3,708,000	
					작업등 + 주방 슬림라인등 + 원형직부등 4. 주방TV(13인치 AI음성인식)	84C	3,843,000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비고
					1 조바 교면 특히 . 이이랜드	59A	6,265,000	
					1. 주방 평면 특화 : 아일랜드 2. 주방 스타일링 특화	59B	4,873,000	
						84C	4,998,000	
					1. 주방 평면 특화 : C자 주방 + 아일랜드 + 주방 팬트리(폴딩도어+선반) + 다이닝장식장(플랩장) + 복도 시트판넬 2. 주방 스타일링 특화	84A	8,435,000	
주방	전 타	1안	1. 벽: 타일(300*600) / 상판: MMA 2. 국산 싱크수전	2안	1. 주방 평면 특화 : C자 주방 + 다이닝장식장(플랩장) + 가구판넬 + 복도 시트판넬 2. 주방 스타일링 특화	84B	7,184,000	
특화	입		3. 주방 기본조명기구		1. 주방 평면 특화 : C자 주방 + 아일랜드 + 주방 팬트리(포켓슬라이딩도어+수납장) + 다이닝장식장(여닫이장) + 복도 시트판넬 2. 주방 스타일링 특화	109	12,662,000	
					1. 주방 평면 특화 : 더블 아일랜드 + 가구판넬 + 다이닝장식장(여닫이장) 2. 주방 천장 특화 : 대형 우물천장 3.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4. 외산 싱크수전 5. 주방 특화조명기구 : 커튼박스 간접등 + 주방 작업등 + 주방 슬림라인등 + 원형직부등 6. 주방TV(13인치 AI음성인식)	136	9,899,000	

- 주방 스타일링 특화 옵션 및 주방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및 주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및 주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국산 싱크수전(센서식 절수기 일체형)'이 설치됩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및 주방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타입별로 특화 적용 부위 및 주방가구의 구성, 형태가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링 특화 및 주방 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특화 조명기구의 사양, 형태 및 수량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B, 109타입의 경우 주방 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냉장고장의 길이 및 구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36타입의 경우 주방 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냉장고장의 길이 및 구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36타입의 경우, 주방 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전기오븐의 설치 위치가 상이합니다. (주방 특화 옵션 미선택 시 쿡탑 하부 설치, 주방 특화 옵션 선택 시 아일랜드장 설치)
- 본 공사 시 팝업 콘센트의 설치 유무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콘센트 본체 및 전선이 하부장에 노출되며 하부장 수납공간이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 사양은 변경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주방 스마트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이프업 스타일링 조명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일반형/고급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 AI음성인식 주방TV의 경우 각 세대별로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제어 및 음성인식이 가능하며(소비자가 별도 구축) 홈네트워크 연동(문열림, 세대현관 및 공동현관 확인 등)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위: 원, VAT포함)

<u> </u>							(단위 : 원, VAT포암)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비고
	59A/B	1안	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패키지 LG전자 BC1L2AA,BC1F2AA,BC1K2AA		
주방	84A/B/C	1-1안	냉장고 상부장 + 김치냉장고 상부장	2안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패키지 + 키큰장		
무당 냉장고장	109	1-2안	냉장고 상부장 + 가전소물장 + 키큰장		LG전자 BC1L2AA,BC1F2AA,BC1K2AA	4,900,000	미스트 크림화이트
0020	136	1안	생장고 상부장 + 김치냉장고 상부장 (주방 특화 시: 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패키지 + 키큰장 LG전자 BC1L2AA,BC1F2AA,BC1K2AA (주방 특화 시 : 키큰장 미포함)		
쿡탑	전타입	1안	3구 가스쿡탑 린나이 RBR-S3410BSJ	2안	쿠첸 CEN-IF3A0NBA	650,000	인덕션3구
식기	対にLOI	101	n d t	2안	삼성전자 DW60BB800UAP	1,100,000	베티치이트
세척기	전타입	1안	미설치	3안	삼성전자 DW60BB837UAP	1,400,000	새틴화이트
전기오븐	전타입	1안	미설치	2안	LG전자 MZ385EBT1	450,000	
전기오는	건되답	12	j 글시	3안	LG전자 MZ941CLCAT	850,000	

- 주방 냉장고장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이 변경되며, 형태 및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B, 109타입의 경우, 주방 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기본형(1-1안, 1-2안) 및 옵션형(2안)의 냉장고장 구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36타입의 경우, 주방 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기본형(1안) 및 옵션형(2안)의 냉장고장 구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냉장고장 84A/B, 109, 136 타입의 경우,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기본형(1안) 및 옵션형(2안)의 냉장고장 구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패키지는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로 구성되며, 각 냉장고의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타입별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패키지의 전면 패널의 마감재는 상기와 같은 색상으로 설치됩니다.
-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패키지의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 전기쿡탑 옵션형(2안-인덕션 3구) 선택 시에는 주방 상판에 가스배관용 원형 타공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타입별 식기세척기의 전면 패널의 마감재는 상기와 같은 색상으로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기본형(1안) 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 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 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36타입의 경우, 주방 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전기오븐의 설치 위치가 상이합니다. (주방 특화 옵션 미선택 시 쿡탑 하부 설치, 주방 특화 옵션 선택 시 아일랜드장 설치)

4) 라이프업 스페이스 옵션 (유상)

(단위: 원, VAT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u> </u>	금 액	비고
비스포크 스튜디오	84B	1안	침실1	2안	 간살 파티션 벽/천장 마감 특화 조명기구 특화 	3,954,000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 배선기구, 전자식 스위치, 환기디퓨저 및 시스템에어컨/공기청정기(유상) 등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간살 파티션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디자인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간살 파티션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간살 파티션의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벽/천장 특화 마감재(디자인 보드)의 제조사, 규격, 사양 및 시공패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 비스포크 스튜디오 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이프업 스타일링 조명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일반형/고급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5) 라이프업 바스 옵션 (유상)											
구분											
욕실	전타입	1안	1. 벽: 타일 (300*600 / 국산) 2. 국산 수전 3. 국산 도기(세면대 / 양변기)	2안	1. 벽: 대형타일 (600*1,200 / 외산) 2. 외산 수전 3. 외산 세면대 / 비데일체형 양변기	59A/B 84A/B/C 109	7,800,000				
특화 	선탁립	10	분리형 전자비데(욕실2, 1개소) 4.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 (욕조욕실) 5. 기본형 욕실 액세서리류	20	4.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조욕실) 5. 욕실 액세서리류 색상 특화 6.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 특화 (부스욕실)	136	13,497,000				

- 욕실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이 불가합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전자비데는 욕실2 1개소에 설치됩니다.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비고
욕실복합	59A,B / 84A,B,C / 109	1안	미설치	2안	욕실 복합환풍기 힘펠 FHD3-C150P_MT 1개소	630,000	59A,B : 욕실1 84A,B,C/109 : 욕실2
환풍기	136	12	미글시	2안	욕실 복합환풍기 힘펠 FHD3-C150P_MT 2개소	1,260,000	136 : 욕실2, 욕실3

- 욕실복합환풍기 옵션형(2안)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위치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세대당 1개소(136타입은 2개소) 설치 가능하며, 설치 가능한 욕실은 상기 표의 비고와 같습니다.

2. 가전

1) 시스템 에어컨 (유상)

(단위: 원, VAT포함)

제조사	타입	옵션안	장비 대수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고
	59A,B	1안	2대	거실, 침실1	2,800,000	
	39A,D	2안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400,000	
		1안	2대	거실, 침실1	3,200,000	
		2안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800,000	주방특화 미선택 시
	84A	3안	5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6,900,000	
		4안	3대	거실, 주방, 침실1	4,400,000	주방특화 선택 시
LG전자		5안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6,900,000	구정국와 선택 시
	84B	1안	3대	거실, 주방, 침실1	4,400,000	
	<u></u> 84В	2안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6,900,000	
		1안	2대	거실, 침실1	3,200,000	
	84C	2안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800,000	
		3안	5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6,900,000	
	109	1안	3대	거실, 주방, 침실1	4,500,000	

	2안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7,200,000	
	3안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8,400,000	주방특화 미선택 시
	1안	3대	거실, 주방, 침실1	4,900,000	
136	2안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8,800,000	
	3안	7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가족실	10,200,000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단종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매배관 2개소(거실, 안방)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침실1에는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되며 거실에는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 설치제품(판넬 등)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이나,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시스템 청정 환기

(단위 : 원, VAT포함)

제조사	타입	옵션안	장비 대수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고
50A /B		1안	2대	거실, 침실1	1,980,000	
	59A/B	2안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3,940,000	
		1안	3대	거실, 주방, 침실1	2,960,000	
	84A	2안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4,920,000	
		3안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알파룸	5,900,000	주방특화 미선택 시
사서저기	삼성전자 84B/C	1안	3대	거실, 주방, 침실1	2,960,000	
검정선자		2안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4,920,000	
		1안	3대	거실, 주방, 침실1	2,960,000	
	109	2안	5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4,920,000	
		3안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5,900,000	주방특화 미선택 시
	126	1안	3대	거실, 주방, 침실1	2,960,000	
	136	2안	6대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5,900,000	

- 시스템청정환기는 선택 옵션에 따른 설치 공간의 면적에 따라 공기청정화 능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작동에 따른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환기 디퓨져의 설치 개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의 설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는 무선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장비 1대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소모품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 (유상옵션) 유의사항

- 추가 선택 품목 및 가전(시스템에어컨/시스템청정환기/빌트인가전/조명기구)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이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 품목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용도에 맞게 선택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사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4/tangjeong c1)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추가 선택 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 선택 품목 금액에는 인지세,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간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일회사의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 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 결정기간 이후 선택품목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합니다.
- 옵션표 상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명기구]

- 주방특화옵션 선택에 따라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 조명특화 유상옵션 선택 시 거실, 침실등의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은 하부면을 비추는 조명부분만 제공됩니다.
- ▶• 거실/침실 조명특화 선택시에만 디밍과 색온도 제어가 가능한 풀터치 고급형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미선택시 조명ON/OFF 기능만 가능한 일반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 ▶ 주방 스마트스위치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에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빌트인 가전]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납부계좌

구 분	납부시기	은행명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계약시	우리은행	1005-404-637763	㈜대우건설		
잔 금	입주지정기간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상기계좌로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잔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잔금은 우리은행, 1005-404-637763, 예금주 : (주)대우건설로 집금됩니다.
-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는 결정하셔야 하며, 자재발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중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이며, 인지세,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를 별도계약으로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은 입주자의 책임이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및 변경을 개별시공 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 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평면옵션, 특화품목 선택에 따라 냉매배관, 조명기구, 배선기구, 전자식스위치, 세대/통신단자함, 온도조절기 등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 (유리, 창틀, 하드웨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 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세대는 비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째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실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또는 벽체 돌출, 실사용면적의 감소, 천장 크기의 감소, 조명의 상태와 변경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각 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 쪽으로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제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 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환기구, 급배수관, 에어컨 매립배관의 위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도서 및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및 주방가구 및 확장 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 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세탁기 설치 공간 및 수전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일부)또는 다용도실,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사이즈로 인해 외부로 나갈 수 없는 구간들이 있으니 도면 및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단지 여건 등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년 5월 9일 최초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기준, 규정 등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기준, 규정 등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시의 기준, 규정 등과는 상이할 수 있으나 소급, 변경 적용은 불가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산업단지개발사업지 내 공동주택용지에 건축되며 주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 및 기반 시설의 조성계획, 입주계획 등은 변동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분양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4/tangjeong_c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설치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동 번호, 외벽 로고 등의 내용, 구성, 위치, 형태, 재질
- 2. 조경 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포장, D/A(설비환기구), 옥외 시설물, 문주 등 그 밖의 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개소 및 경관계획 (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색채계획 등
-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 (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충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단, 대지면적은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변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본 단지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제반여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단차이가 발생하며 본공사시 마감계획은 "조경석, 토목옹벽, 건축벽체"등으로 선택 시공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의 돌쌓기 여부와 위치 및 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경관조명, 공용조명등 & 통신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포장시설, 운동시설, 수목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방지 열선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벽 입면 및 옥상구조물 내부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사인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에 의거 단지 내 소방관련 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추후 소방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근린생활시설 지상(지붕층 포함) 및 부대시설 내부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8동, 209동은 주동과 근린생활시설이 접해있어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근 세대에 소음 발생 등 환경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지상주차장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었을 경우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 및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환기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지상 1층 동출입구 및 측벽에 인접하여 D/A(설비환기구)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 조경 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외부 경관,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외부 경관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보기둥 슬래브 PC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공법 및 구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 최대 유효 지반가속도 0.207q입니다.
- 단지 내 문주 및 주차램프와 인접한 각 동 저층부 세대는 해당 구조물들로 인해 조망,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견본주택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문주에 인접한 동은 출입시 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 시설물의 마감재료(금속, 유리 등) 특성상 반사로 인해 단지내 통행로 및 일부 세대창문에서 외부 조망시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견본주택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녹색건축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등 각종 인증 관련 평가시점에 따라 항목별 등급, 점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다른 단지, 타사 단지외 비교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합니다.(단, 대지면적은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대규모 물류 마비, 파업, 문화재 발굴 또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공공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공급안내 및 분양자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한 것이며 포함 여부는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 공급안내문 및 홈페이지,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 크기 및 위치, 발코니 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 한 것이므로 계약 전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도서의 확인, 현장방문의 수단을 통하여 그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계획 예정도는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각종 인쇄물, 홈페이지 및 홍보물의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기구, 사인물 등 부착물이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홈페이지,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완충 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홈페이지는 분양완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거나 폐쇄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84m²B, 109m²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면형태 및 가구형태(일부 유상 또는 무상, 기준층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CG 등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평면형태외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세대의 외부벽체 및 외부 바닥마감, 조경 및 시설물 등은 견본주택 전시용으로 시공되었으며, 본공사시 외벽은 해당 위치의 외벽마감(도료 및 기타외장재 등), 바닥은 외부 조경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연출용 조명을 포함한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무상선택 또는 유상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전시품목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세대의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무상선택 또는 유상옵션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부 세대는 유상옵션 미선택시 평면형태, 제공품목, 조명기기의 위치, 시스템선반 설치유무 및 길이, 주방가구의 형태 또는 길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무상옵션 선택 결과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혹은 샘플로 전시된)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과의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 마감재리스트 등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시 등의 사유로 동질,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는 제조사 사양, 색상, 유리, 하드웨어,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CG 등은 일부 내용이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와 차이(도어 및 창호의 위치, 열리는 방향, 도어의 종류(여닫이 또는 미서기 등), 크기 등의 변경을 포함함)가 있을 수 있으니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및 인허가 진행상황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생략 또는 표시(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시스템에어컨, 욕실환기팬, 환기디퓨저)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져,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템 청정 환기,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Wall-Pad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색상,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므로 세대별로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에 타입별 형태, 가구배치 및 상세, 실면적, 비확장, 확장라인 등 견본주택 설치 타입과 상이한 점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미 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외부조경 및 외부마감 포함) 또는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 투시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또는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유효 동선 확보, 설비배관 공간 확보,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필로티의 유효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D/A,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대, 수경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상에 생략되어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외부 조경 바닥마감 색상 및 패턴은 본 시공 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변경)시행인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미건립 평형의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악세서리 등)제품 등은 동일 평형대의 건립세대에 설치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되며 일부 타입은 평면 특성상 일부 가구, 조명기구, 위생기구(수전, 도기, 악세서리 등)가 변경되어 설치되거나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 시 세대 내부에는 관련 법규에 맞추어 시공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은 견본주택 오픈 전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실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각종 전시상품 및 유상옵션 품목이 포함된 사진 또는 동영상이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대 내부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동일한 주택형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및 옵션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본 시공 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 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 사항임)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가 미포함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 유리슬라이딩 도어, 실외기실 도어,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환기스위치,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및 바닥 배수구의(입상관 포함), 점검구, 발코니수전의 제품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 방문자를 위한 냉난방 겸용 제품이며, 냉방전용 본공사 계약 모델은 추후 옵션계약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 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아파트 내 외관, 색채, 조경, 기타 시설물의 디자인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플러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가구 및 세대 내 마감의 마감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 카달로그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 단지 조경 식재 및 휴게, 놀이 시설물, 포장 계획은 단지 모형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위치도에 표기된 사항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도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견본주택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시에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명칭

- 아파트의 명칭,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는 사업주체 소유의 상표로서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외부 시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야간 경관조명 등 외부상세계획 등은 주택 인/허가, 경관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 또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옥상구조물 상부 및 내부면은 도장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놀이시설물 및 휴게시설물의 디자인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주택 인/허기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이 (재질, 높이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단지 외부 사이에 경계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색채계획, 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경비실, D/A(설비환기구), 외부 엘리베이터/계단실 등)의 형태, 디자인, 마감재 등은 기능 및 외관 개선을 위해 인허가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저층부는 도료, 석재, 기타 외장재 등으로 적용되며, 주동 형태, 인허가 조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동별 자재 적용 비율 및 높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근린생활시설 인근 208동 전면, 209동 전면에 각 1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미관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와 연결되는 계단의 위치 및 형태,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지상층 출입구는 출입구의 위치나 형태에 따라 높이가 1~2개층으로 구분되므로 반드시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에 방음벽 (최대 높이 약 15m)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분양홍보물(모형, CG 등)에 표현된 방음벽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장 시공 과정에서 소음예측평가 및 관련 부서 협의에 따라 방음벽의 높이, 길이, 시공위치, 재질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음벽으로 인해 저층부의 조망, 채광 등에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방음벽의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 외곽의 돌쌓기 위치 및 형태는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심의 과정에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지붕층 방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도막방수 위 무근콘크리트 또는 노출도막방수)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시설

- 부대복리시설 종류 : 관리사무소 1개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자전거주차장, 생활폐기물보관소 10개소(공동주택 8개소, 근린생활시설 2개소), 주민공동시설(시니어클럽,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그리너리카페(작은도서관), 독서실, 주민회의실, 키즈스테이션, 피트니스클럽, GX룸, 골프클럽,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다함께돌봄센터)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 용도 및 디자인은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휴게시설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에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27개월)동안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핑 후 메인배수관에 연결됩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 (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운영 방법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은 추후 입주 시 관리주체의 운영지침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주동과 인접할 경우 해당 저층부 세대에 소음, 진동 등이 발생 및 전달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 됩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단지 및 지하주차장 배치에 따라 주차장에서 각 동별 이동시 이동 통로가 다른 구간에 비해 길게 형성되는 구간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을 포함한 외부 휴게공간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종(식당, 관람집회시설 등)과 관련한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옥상조경 및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제 시공 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주택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용 CG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동 지하1층에 게스트하우스, 207동 1층에 어린이집, 208동 1층에 다함께돌봄센터, 210동 1층에 시니어클럽이 위치합니다. 해당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실외기 등 설비에 의한 소음 등 환경권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 배치에 따른 지하주차장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각 주동에 인접하여 펌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A(설비환기구)는 실제 시공 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들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통해서 계약 전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상수위 제어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소유의 전기설비, 전기인입 맨홀 및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1층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및 지상 환기창(또는 녹지구간)에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으며, 특히 발전기실에 인접한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시험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은 내/외의 심한 온도차이 발생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설비 또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지붕 등 추가적인 차폐시설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 조망권 간섭, 시야 차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공용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측벽 포함)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장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안면방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공용 태양광 패널이 202동, 203동, 206동, 207동, 208동, 209동, 210동, 211동, 215동, 216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실시공 과정에서 패널의 설치 위치 및 규모

(크기, 높이,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전파측정결과에 따라 옥외안테나는 옥상층(201동, 203동, 207동, 209동, 211동, 215동), 중계장치는 옥상층(201동, 203동, 207동, 209동, 211동, 215동), 지하1층 휀룸 4개소에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고, 설치위치에 대한 변경 요청은 불가합니다.
- 동별,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거나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층수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 침실은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될 수 있음) 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호실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은 동별,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호실의 경우 택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닛의 디자인 및 색상, 사이즈는 예시이며 추후 같은 등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본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등 각 시설 설치 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완충녹지 계획은 실시계획인가 과정 및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실시계획인가 등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가스, 공공시설, 공원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수도용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쌓기, 토목옹벽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의 마감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 및 생활편의 시설, 도로의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 및 악취,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를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계획변경

- 본 아파트의 구조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부재의 단면 및 주근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 내에 설치하는 구조물 (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등 단지조경 및 디자인은 향후 환경개선(기능) 등으로 인하여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인/허가 기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기관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단, 대지면적은 각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단지 내 조경 및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와 수목의 뿌리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근기능으로 자갈 배수층으로 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방근 자재 등에 대해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외기실 등 발코니에 환기시스템 (장비)이 설치될 수 있으며, 환기시스템에 따른 입면, 창호, 전등, 환기구의 위치 크기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장비)이 설치되는 실외기실의 천장에는 천장 마감이 없이 노출시공 됩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 (급/배기용)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되며, 형태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AD를 통한 배기시설이 아닌,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김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 내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주동 필로티 출입동선에 위치한 캐노피는 통행로 변경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일부 저층부 세대는 시설물, 방음벽 및 조경 등으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공해, 빛공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주차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층간 완충재 관련 법적기준 인정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주변에는 저류시설, 아산신도시물환경센터, 곡교천 등이 인접해 있어 악취, 해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설비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각 동 필로티 또는 실외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근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단지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는 소음 및 냄새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공용 엘리베이터 주변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계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 하고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도로와 인접한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출입구1,2,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동과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동의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어 계약 전 위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동 주변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에 견본주택 모형 및 도면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이동통신용 안테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1층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인근 저층부는 냄새 및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형 위주 주동 배치로 인접세대 위치 및 창호설치에 따라 동간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201동, 202동, 203동, 204동 저층 일부 세대는 방음벽으로 인한 조망 및 일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4동, 205동, 212동, 213동은 지구단위계획 상 중층배치구간(15층 이하)에 해당하며, 단지의 배치상 저층 세대 및 특정 세대의 일조량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일조환경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사유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견본주택에서 단지모형 및 일조분석보고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로 인하여 인근 세대의 미관저해, 소음 및 분진, 냄새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를 위한 드롭존이 계획되어 있으나, 본공사시 드롭존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도로선형, 주정차 가능대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드롭존은 삭제 또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공용홀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분양 카달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법적 기준 내)
- 세대 현관에 스마트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EV홀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세대 조합, 층차이 등의 이유로 세대 앞 엘리베이터 홀 면적(공용공간)은 동, 호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생-아파트 주차장 공유

-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201동, 208동, 209동, 216동 인접세대는 소음 및 분진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저층세대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설별 주차계획 구분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주택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 및 조경식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펜트하우스 136타입은 2,500mm로 시공됩니다)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현관펜트리,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실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과 다용도실은 마감여건 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ALC블럭,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ALC블럭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무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조건 이행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용으로 본공사 시에는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위치 및 크기, 개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내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시 하부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덮개 개방시 하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안관련 경보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당 1개소 설치되며 위•아래층 교차 시공되며 시공 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따른 소음 등이 생길 수 있으며 1층세대와 필로티 상부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피난구 설치로 인해 발코니 바닥 높이 또는 문턱 높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 (비확장) 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수량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샤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주택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일부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는 설치되지 않으며,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우수에 의한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실 등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비확장형 선택 시 기본형 옵션 및 플러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에 배수배관 및 배기관이 노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 ┃•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실제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 (예 : 목재, 인조대리석,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나누기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개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세대 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옵션 미선택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시)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가구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 시 Staple Tacker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포셀린 및 도기질, 자기질 타일은 대형타일 및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줄눈 두께 상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적 특성상 이음매가 노출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줄눈 두께 상이, 자연무늬(베인)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상부장, 하부장, 아일랜드장 등), 빌트인가전,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실의 스위치 및 콘센트의 색상, 규격 및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벽체(침실,욕실,PD 등의 부분)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ALC블록, 경량벽체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주방가구는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침실, 욕실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기준은 주택형별로 구성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디
- 옥상구조물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 및 두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간의 위치 및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전 타입 침실1 발코니로 나가는 분합창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 3년간 무상서비스로 제공된 후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 환기, 쿡탑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및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도 사업주체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시, 안드로이드 7.0 누가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댁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세대내의 각 종 홈넷 기기의 제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App과 연계되는 제휴서비스 업체들은(주거서비스) 계약기간 혹은 해당사의 정책 등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의 연동은 당 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 노출)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가 노출 설치되며, 이에 따라 마감재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 시 피난 공간(관련규정에 근거)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 발코니 또는 보일러실의 경우 스프링클러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되거나 천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사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된 온수배관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내부에 유지보수를 위한 상부세대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에 설치됩니다.(1층 필로티인 경우 2층 및 최상층 세대 설치, 1~2층 필로티인 경우 최상층 세대만 설치됩니다)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펜트리, 욕실 등의 난방은 별도의 실별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인근의 침실 또는 거실의 실별온도조절기와 연동되어 작동됩니다.
- 입주 후 보일러 유지보수를 위하여 세탁기, 건조기 및 김치냉장고 등 가전류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서 세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은 외벽에 노출 설치되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계량기 설치에 따라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내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수전, 드레인, 선홈통, 보일러 등의 설치 위치 및 개수, 사이즈는 변경(위치변경, 추가 또는 미설치 등)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발코니2) 상부에 상부층 배수배관이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다용도실의 천장 높이가 낮아질 수 있으며,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를 올려 사용할 경우 유지보수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세대 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마감사양(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 루버는 필히 닫힘구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모든 타입의 세대 보일러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겨울철 보일러 및 급수, 배수배관 등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창호 및 루버 등 열린부위가 없도록 반드시 닫힘으로 관리하여 동파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거실, 안방 등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실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 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벽걸이TV 설치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입주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회사 제품의 문제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통신분전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은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및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월패드,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견본주택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Wall-Pad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로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의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바닥, 아트월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아트월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특성 상 이유매 부분이 발생합니다.
- 타일,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등의 마감재는 가공 및 생산방식에 따라 견본주택과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강마루의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TV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모델하우스 및 사업승인인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는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36타입(펜트하우스)의 일부 오배수배관 및 외부공간 우수배관 층상배관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유지보수 방식이 층하배관방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136타입(펜트하우스)의 오배수 배관 위치에 따라 하층부 세대는 배관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36타입(펜트하우스) 실외기는 외부 공간에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36타입(펜트하우스)의 외부공간에는 우수에 의한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36타입(펜트하우스)의 외부공간 바닥배수구 막힘으로 인한 세대내 우수유입 방지를 위하여 바닥 청소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136타입(펜트하우스) 등 외부공간의 경우 단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진입 요구 시 개방하여이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함. 또한, 외부공간은 공용공간으로 불법 건축물 설치 시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 본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은 207동 하부에 위치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충청남도 아산시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관련 법규 및 관할 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아산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70% 까지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민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충청남도 아산시(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및 사용료,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다함께돌봄센터

- 본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제35조 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 및 제55조의2 제3항 제3호,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 해당 센터는「아동복지법」제44조의 2에 따라 관할 관청인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충청남도 아산시와 체결할 예정이고,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다함께돌봄센터 70% 까지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입주민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소 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는 향후 충청남도 아산시(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및 사용료,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지의 공동주택에서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탕정미래초등학교에, 중학생은 탕정학군(탕정중학교, 아산갈산중학교(2025년 3월 개교 예정), (가칭)탕정4중학교(2027년 3월 개교 예정)]에 배치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산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민원을 일절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 설립은 학교설립요건(공동주택 개발 세대수 및 입주시기, 유입예상 학생수, 인근학교 배치가능 여부 등)이 충족되어야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할 수 있고, 심사 승인 시 추진이 가능합니다.
- 또한, 탕정테크노산업단지 내 확보된 미활용 학교용지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청약 및 계약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일절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지역도시가스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입주 전까지 공급 될 예정이며, 필요시 가스공급을 위한 단지정압기가 조경공간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의류관리기, A/C실외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장소에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행 및 시공측은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품목이며, 제조사 및 모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현재 버스노선 및 버스 운행 횟수 미확정으로 본 사업지 준공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버스정류장 설치위치가 결정될 예정으로 추후 버스정류장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주택부양보증약관에 따른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12024-101-0005700호	₩441,061,6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
- 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 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1566-9009)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구분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일반사항 설계기준 준수		
(제7조 제2항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설계기준 준수		
제1호)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설계기준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급수펌프(마목)	적용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가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제57조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파트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 분	금액(천원)			구 분	금액(천원)		구	분	금액(천원)
		택지공급가격	108,107,955			철근콘크리트공사	108,783,747			위생기구 설비공사	6,592,857
		기간이자	8,975,764			용접공사	0			난방설비공사	6,233,246
택지	[H]	필요적 경비				조적공사	2,816,948		기계설비	가스설비공사	2,097,727
		그 밖의 비용	30,009,932			미장공사	9,589,610		기계길미	자동제어 설비공사	1,228,668
		계	152,808,458			단열공사	2,547,240			특수설비공사	800,133
		토공사	3,536,168			방수, 방습공사	4,345,292			공조설비공사	0
		흙막이공사	0			목공사	3,745,941	공사비		전기설비공사	9,990,446
		비탈면보호공사	0			가구공사	7,731,623		그밖의	정보통신공사	8,831,000
		옹벽공사	0			금속공사	3,026,720		공종	소방설비공사	9,763,000
		석축공사	0		공사비 건축	지붕 및 홈통공사	2,936,818			승강기공사	5,166,402
		우수, 오수공사	1,828,019	고사비		창호공사	12,736,201		그밖의	일반관리비	16,641,221
	토목	공동구공사	0	011		유리공사	4,465,162		공사비	이 윤	23,306,386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749,188			타일공사	6,113,376			계	336,536,279
공사비		도로포장공사	599,350			돌공사	3,056,688			설계비	2,341,46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149,837			도장공사	2,966,785			감리비	9,328,841
		정화조시설공사	0			도배공사	2,247,564		일반분양시설경비		21,073,829
		조경공사	8,390,909			수장공사	8,091,233	간접비	분[담금 및 부담비	9,060,792
		부대시설공사	3,296,428			주방용구공사	8,690,584			보상비	0
		공통가설공사	9,949,220			그 밖의 건축공사	2,846,915		기티	사업비성 경비	39,016,514
	ᄁᄼ	가시설물공사	3,566,136		기계	급수설비공사	3,146,590			계	80,821,436
	건축	지정 및 기초공사	10,488,636		기계	급탕설비공사	1,798,051		그 밖의	의 비용	59,921,826
		철골공사	0		설비	오수,배수설비공사	1,648,214		합	계	630,088,000

^{※「}주택법 시행령」제6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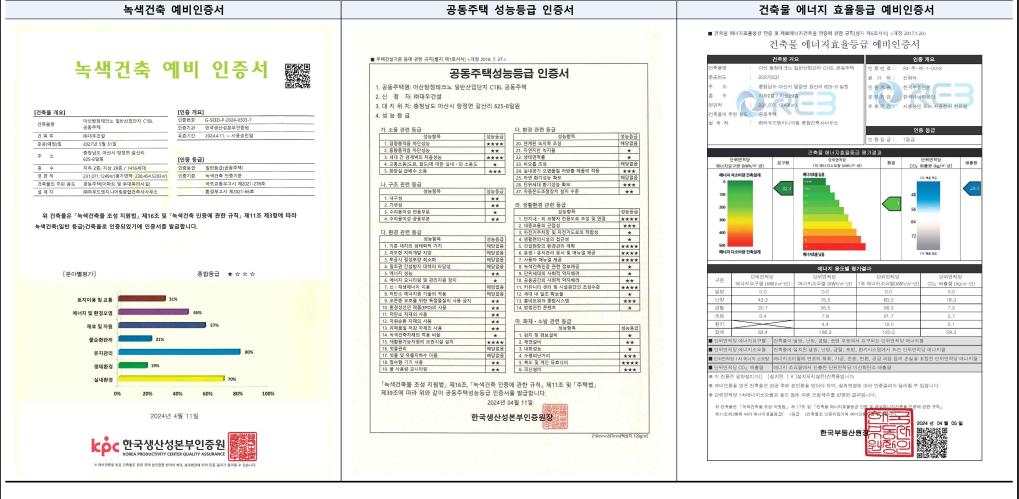
■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의거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기간이자	8,975,763,630		법정초과복리시설		3,065,979,363
	MESIN	0,313,103,030	건축비	인텔리전트설비 .	홈네트워크	15,991,976,000
	제세공과금	5,714,807,276			초고속통신특등급	5437615000
				공사비	에어컨냉매배관	5377899000
	말뚝박기	21,658,755,000			기계환기설비	8282121000
택지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동주택성능등급		9,652,298,401
가산항목		3,934,951,000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5,710,883,109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2,163,718,000
	방음시설 설치비	4,416,226,00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083,926,000
-				법정초과조경설치비		1,308,602,000
	소계(택지비 가산항목)	44,700,502,906		분양보증수수료		1,849,177,920
	= "(1 1 1 12 1)	,,		소계(건축I	비 가산항목)	59,924,195,793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주택법」제39조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호의 2

<u> </u>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 2.7m 이상(택배차량 진입가능)	주출입구 1(201, 208동 사이) 주차장 출입구 : 2.7m 이상
지하 2층 : 2.3m 이상(택배차량 진입불가)	주출입구 2(209, 216동 사이) 주차장 출입구 : 2.7m 이상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거축번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환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이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최대유효지반가속도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MMI 등급)
0.207a	VII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 포함)

구 분	건축/토목/기계	전기	소방	정보/통신
회사명	㈜중앙엔지니어링	미정	미정	㈜아키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4,877,485,000	미정	미정	205,920,00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전기감리, 소방감리는 해당공종 투입시점에 공고 및 선정 예정임. (아산시)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상 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및 시공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을지로 4가)	110111-2137895

- 견본주택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90
- 사업부지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5-8일원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C1BL)
- 홈페이지: https://www.prugio.com/hb/2024/tangjeong_c1
- 견본주택 및 사업지 위치 약도



■ 분양문의: 1551-1416 (10:00~17:00)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